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9.

발 의 자 : 문금주 · 이주희 · 강준현
권향엽 · 정진욱 · 진성준
조인철 · 박해철 · 박용갑
장종태 · 김남근 · 이용우
오세희 · 임미애 · 손명수
이재관 · 김 윤 · 황명선
이광희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, 2024년 말 기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9,904명, 공동생활가정 보호 중인 아동은 2,578명,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은 7,703명임.

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은 건강, 발달, 교육 및 사회적 관계 등에 있어 다른 아동에 비하여 취약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종합실태를 별도로 조사·공표하지 않고 있어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 파악에 한

계가 있음.

또한, 현재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는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 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 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, 보호대상아동 지원 정책을 내실화 하고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상해를 치료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는 아동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의6 신설)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본문 중 “아동의 양육”을 “아동(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여야 한다)의 양육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6(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)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아동종합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아동종합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<u>아동의 양육</u> 및 생활환경, 언어 및 인지 발달, 정서적·신체적 건강, 아동안전,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,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.	제11조(아동종합실태조사) ① ----- <u>아동 (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여야 한다)의 양육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 <u><신설></u>	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5조의6(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)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<u>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.</u>